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에 관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운영사무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 필요성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 인력 및 노하우 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올리고, 안정적 시설운영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 및 휴식공간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4) 위탁시설 개요

- 위치 : 마포구 성산로 128, 지상 1층 갤러리
- 규모 : 300 m^2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2024. 3. 1. ~ 2027. 2. 28.(3년) 예정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예산 기준)

- 소요예산 : 145,185천원
- 산출근거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145,185		
인건비	110,946	·기본급 및 제수당 등 3,362천원×3명×11개월	공무·현업직 생활임금 기준 준용 (※8개월분)
운영비	34,239	·3,113천원×11개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구청장은 청소년 시설 및 구립 도서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에 관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9)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 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4. 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 2024. 1월 ~ 2월
- 협약체결: 2024. 2월
- 위탁운영: 2024. 3월 ~ 2027. 2월(3년)

다.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로 구의
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전임.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운영사무의 위탁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새로운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2023.3.9.>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